

시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1324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목 차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5233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인천광역시조례 제5234호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8
- 인천광역시조례 제5235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인천광역시조례 제5236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인천광역시조례 제5237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인천광역시조례 제5238호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20
- 인천광역시조례 제5239호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5
- 인천광역시조례 제5240호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9
- 인천광역시조례 제5241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33
- 인천광역시조례 제5242호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42
- 인천광역시조례 제5243호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46
- 인천광역시조례 제5244호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53
- 인천광역시조례 제5245호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58
- 인천광역시조례 제5246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 인천광역시조례 제5247호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5
- 인천광역시조례 제5248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 인천광역시조례 제5249호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77

회							
람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8호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8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9호 (인천 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류5호선 외 2개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8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80호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결과 고시) 90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51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 2-①단계
준공 고시) 95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2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9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38호 (긴급 주거비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10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4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10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48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10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4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1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51호 (2013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시송달 공고) 11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5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127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3-153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 : 미단시티 근린공원
제11호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28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150호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 130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15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3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15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135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15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38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6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41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8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4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개정사유

- 가. 심도 있는 안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팀장급 이상 공무원까지 출석요구나 답변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 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후 위원장 호선을 위한 의사진행은 그 동안 연장자가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을 준용하여 최다선 위원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활동기간 만료 전까지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활동결과를 보고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나, 활동기간 만료 전까지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아 기간 경과 후 본회의에서 안전처리 시 보고주체나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까지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0호)
- 나. 공무원 외에도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무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근거를 추가함.(안 제30조제1항)
- 라. 특별위원장 호선을 위한 의사진행은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 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본회의에 제출된 안전 또는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그 안전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

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30조제5항)

- 바. 의장은 원구성 이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 정수 범위에서 소속 위원회를 달리하여 개선(改選)하거나 의원직 상실, 사직·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특정 위원회가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보궐선거 당선인 또는 다른 의원을 보임(補任)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 사. 인천광역시조례 제4972호(2011.10.24.공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삭제된 제16조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된 별표 3을 삭제함.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33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중 “관계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중전의 본문) 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② 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2.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제30조제1항 중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 위원인, 최다선 위원인 2명 이상인 경우나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56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 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제목 중 “선임”을 “선임 및 개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한다. 이 경우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 가. 결산검사위원 추천 시에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 나. 그 밖에 일부 중복 조항과 불명확한 표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 추천 대상자의 수를 각각 2명과 1명으로 명확히 정함.(안 제3조)
- 나.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안 제3조, 제6조, 제8조 및 제13조)
- 다. 별표와 별지서식을 정비함.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34호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을 “선임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별표1”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결로써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1명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를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8조 중 “시장과 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를 “시장·교육감 및 금고(시장과 교육감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의 책임자”로 한다.

제13조 중 “별표2”를 “별표”로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 분	액 수
수 당	1일 15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상의 제1호 다목 상당액

[별지 서식]

위 축 장

○ ○ ○

귀하를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직인)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 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는 질서위반 행위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 나.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흠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 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자치법규 체계에 맞지 않는 관계로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는 집행부의 사무인 관계로 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교육감이 유사 규칙을 준용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 나. 위증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은 감사 또는 조사 주체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 다.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3조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의회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하는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함.(안 제2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35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무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분장사무로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의 분장사무에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 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36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 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 나.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담당부서 설치와 퇴직예정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가. 감사관의 직급이 피감사기관인 본청 실·국장이나 관할 군·구 부단체장의 직급보다 낮아 독립적 감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감사관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 나. GCF 사무국 지원과 기후변화대응 등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한 GCF전략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4급 1명을 증원함.(안 별표 3)
- 다. 기능직 공무원 19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3)
 - 기능직 19명 감원, 일반직 19명 증원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37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43명”을 “5,6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392명”을 “3,3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246명”을 “2,2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경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 회 사무처
		소계	본청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총 계	5,666	5,570					96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2,637	2,565					72
1급	1	1			1		
2급	1	1			1		
2급 · 3급	1						1
3급	18	18	10	1	4	3	
3급 · 4급	2	2	2				
4급	118	115	66	4	17	28	3
5급 이하	2,496	2,428					68
별정직 소계	26	21					5
1급 상당	1	1	1				
4급 상당	8	3	3				5
5급 상당 이하	17	17					
연구직 소계	137	137					
연구관	20	20		16		4	
연구사	117	117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3	3		3			
지도사	20	20					
소방공무원 소계	2,255	2,255					
소방정	13	13	5	8			
소방령 이하	2,242	2,242					
기능직 소계	587	568					19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가. 협동조합 지원의 육성과 건전한 발전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조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협동조합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

라.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38호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등을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3.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주·자립·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2.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교육, 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의 인천광역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협동조합 업무 담당 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3.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

료 전이라도 위축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협동조합등간의 협력, 지역 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협동조합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등의 모델 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
2. 협동조합등간의 협력 지원
3.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모니터링
4.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5. 협동조합등의 실태조사
6.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12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협동조합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협동조합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 가. 인천광역시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해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나. 따라서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 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명문화 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39호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창출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시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연계
2.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3. 구인·구직자간 불일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4. 청년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③ 시장은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일자리 창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자금지원 우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일

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가. 2008년부터 구성·운영되어 온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지역의 질서 확립 및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요구 건의사항 등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지방경찰청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장, 전문가 등에서 위원장이 위촉함.(안 제4조)

다. 간사는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함.(안 제8조)

라. 협의회 소집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를 둠.(안 제10조)

바.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사. 협의회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규정.(안 제1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40호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기타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인천지방경찰청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전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협의회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지원) 시장은 협의회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 제안이유

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는 “위원회”의 설치,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지원센터”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사업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별 주민협의회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및 사업비 환수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
- 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해촉,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
- 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아. 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41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군·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군·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8.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인천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 ③ 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
- ④ 협의회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일꾼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려면 미리 시설물의 소재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선정
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 국장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업무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인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천시의원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동간사를 두고, 공동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장과 민간위원 1인으로 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22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6.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외 견학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 제안이유

가. 시 행정변화로 민간기업과의 업무 확대에 따른 경영기법 및 금융분야 전문 지식 필요와 복식회계 도입 및 활용분야 확대에 따른 회계·세무 전문가 지원 수요 증가로 고문 회계사·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상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인되는 회계·세무분야에 대한 전문분야의 지식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 미흡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위촉할 수 있는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대상, 인원, 임기 및 위촉 해제 사유를 정함.(안 제3조)

다. 자문에 필요한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42호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세무분야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이하 “고문회계사·세무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2.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
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3건 이상인 경우
2.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이 필요한 1건의 사안을 방문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4. 그 밖의 방법으로 자문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자문실적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 축 장

고문공인회계사 · 고문세무사 ○ ○ ○

귀하를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 시의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인)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자립생활센터 운영규정 변경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체험홈, 자립주택,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등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신설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책무와 예산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안 제13조)
- 다. 자립생활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 라. 자립생활센터의 조직과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안 제7조부터 제12조)
- 마.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 바. 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이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주택 제공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 사.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43호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5.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최초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6. “자립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지원하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7. “주거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 내·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
8.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인천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주거환경 개선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8. 중증장애여성의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9.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자립생활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 조사 및 평가
3. 그 밖에 중증장애인 복지 관련사업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조직과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립생활 사례관리
2. 자립생활 기술훈련
3. 활동지원급여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
6. 자립생활 체험홈사업
7.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권익옹호 활동
8. 주택 개·보수 사업
9. 정보제공 활동
10. 거주시설 퇴소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
11. 그 밖에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

제13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지역사회 전환

제15조(자립생활 교육) 시장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

제17조(자립주택 제공) 시장은 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8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①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사업의 우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특성
2.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센터와 그 센터의 장 및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센터, 센터의 장 및 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기존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성평등 관점을 보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 제도 추진의 기반조성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포함.(안 제6조)
-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안 제16조의2)
- 다.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안 제16조의3)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안 제16조의4)
- 마.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 (안 제28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44호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과 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여성정책과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과 성평등 관계법령”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성인지 예산을 비롯한 성평등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시 소속행정기관과”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성평등 도시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과 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부터 다목을 가목부터 나목으로 하며,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② 시장은 성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성평등 정책 추진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차별 예방 및 개선방안
3. 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방안
4. 분석평가 및 성 인지 예산제도
5. 성평등에 대한 주요 시책
6.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조달 방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6조의2(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참여 강화

제16조의3(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6조의4(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제23조의 인천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 담당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성인지 통계 및 자료) 시와 소속기관이 인적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성평등 정책의 지원) ① 시장은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교육·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에 따른 분석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제12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2호부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2. 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

13. 성평등 정책과 관련되는 소관사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

14.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제28조 중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에 성평등 분과위원회 등 여성정책의 세부지원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제6호부터 제8호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 제안이유

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과 보호자, 시민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은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45호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성폭력·학대·약취·유인·유해식품·약물오남용화재·교통·수난(水難)·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초·중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어린이의 의견수렴

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안전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
4.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초·중등학교 등 지역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련 부서 등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초·중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5. 교통안전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안전 관련 주요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초·중등학교 등의 장과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교육기관, 지방경찰청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 가.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
- 나. 공영주차장 급지조정으로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변 교통흐름 개선 및 인근지역상가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계양구 계산동(작전체육공원~오조산공원)지역의 공영주차장 급지를 하양조정(요금인하)하고자 하며
- 다. 기타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변경 관련 정부 조직법 개정 내용대로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각종 관계 법령의 변경된 조항 등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지조성사업의 범위에서 제외(안 제14조의2제1항제3호)
- 나. 현재 1급지로 지정되어 있는 계양구 계산동(작전체육공원~오조산 공원)의 급지를 1급지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1의 비고 제1호 가목)
- 다. 기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 및 관련 법령 조항 등 변경(안 제2조의2 등)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46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1항의 본문 및 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 본문 중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를 “법 제12조의2”로 한다

제4조의2제1호나목 중 “「장애인 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를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제1항 중 “영” 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로 한다.

별표1의 비고 제1호가목 중 “계양구 계산동(작전체육공원-오조산공원)” 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 가. 점차 멸실되어가는 강화지역의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에 관한 재정립을 통하여 한반도 역사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 나. 고려사를 중심으로 강화지역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게 될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가.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재단의 정관에 목적 및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역사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등 재단에서 수행할 사업을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47호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사를 중심으로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게 될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기 및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2. 역사문화유산 관련 정책개발 및 자문
3. 역사문화유산의 교육·보급
4. 남북 역사문화 교류
5. 국내외 관계 기관과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역사문화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 ③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12조(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단에 강화고려역사재단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사업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자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혼성대 및 전담의소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현행 지역대와 본대로 이원화된 체계를 의용소방대로 일원화함.(안 제2조)

나.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조정함.(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30명 이내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대장 및 부대장의 임용 시기를 연 2회로 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라. 대원의 해임사유를 명확히 하고, 대장에 대한 전문교육을 임용 후 이수에서 임용 전 이수로 변경함.(안 제14조 및 안 제21조)

마.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함.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48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소방기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는「소방기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운영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소방서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서 관할 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의용소방대는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1. 남성으로 구성하는 남성의용소방대(이하 “남성대”라 한다)
2. 여성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
3. 남성 및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이하 “혼성대”라 한다)
4.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을 수행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
5.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 의소대”라 한다)

제3조(명칭) 의용소방대(남성대, 여성대, 혼성대, 전담의소대 및 전문의소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남성대: ○○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2. 여성대: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3. 혼성대, 전담의소대 및 전문의소대는 대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것

제4조의 제목 “(의소대의 표지)”를 “(의용소방대의 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로 한다)”를 “의용소방대”로, “이에 관하여 필요한”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소대”를 “의용소방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소대”를 각각 “의용소방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자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5항”을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인”을 “응급의료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레카차”를 “레커차”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남성대와 여성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1명”을 “의용소방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소대”를 “의용소방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장등의 임무)”를 “(대장 등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장(남성대장과 여성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장(남성대장, 여성대장, 혼성대장, 전담의소대장 및 전문의소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통할하며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를 “총괄하며, 대원을 지휘·감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장 · 부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용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부대장, 지역대장, 전문의소대장”을 “부대장”으로, “임용한다”를 “임용하며, 대장 및 부대장의 임용시기는 매년 2회(1월 1일, 7월 1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대장 · 지역대장 · 전문의소대장”을 “부대장”으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를 “대장이 추천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해임된 대원은 해임된 날부터 3년 동안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타 임용에 관하여”를 “그 밖의 임용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대장 등의 임기)”를 “(대장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중 “대장과 지역대장 · 전문의소대장”을 “대장”으로, “하되”를 “하며”로, “제13조 규정의 범위 안에서 2차에 한하여”를 “정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소대”를 “의용소방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원이”를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원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외로 이주한 경우

제14조제8호 중 “3회”를 “3회 이상 또는 연 5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중 “출동하되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교육 · 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

한다. 이하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라 한다)등을” 을 “출동하며,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라 한다) 등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을 “제3항의” 로,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의소대(이하 “전담의소대” 라 한다)의 경우” 를 “전담의소대의 경우는” 으로, “사항은” 을 “사항을” 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담의소대장은 그 복무 및 근무방법 등을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분쟁 기타 단체” 를 “분쟁 및 단체”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연2회” 를 “연 2회” 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괄호 중 “대장 또는 지역대장” 을 “대장” 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의소대” 를 “의용소방대” 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이상, 소방서장은 연 2회이상” 을 “1회 이상, 소방서장은 연 2회 이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장등은 임용 후” 를 “대장은 임용 전” 으로, “교육·훈련을 연차적으로” 를 “교육·훈련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서장은 제16조제4항의” 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으로 한다.

제22조 중 “장학금” 을 “장학금,” 으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예산” 을 “시 예산”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 재난업무수행” 을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 으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를 “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로 , “나눈금액” 을 “나눈 금액”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 을 “제16조제3항” 으로, “제16조제4항의 규정” 을 “제16조제4항” 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소대” 를 “의용소방대”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사망·부상·질병” 을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2가지” 를 “둘”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28조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으로, “3월분” 을 “3개월분” 으로 한다.

제29조 중 “규정된” 을 “따른” 으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를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상” 으로, “6월이내” 를 “6개월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지체없이” 를 “지체없이” 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의소대 및 대원별” 을 “관할구역 의용소방대 및 대원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필요한 사무관리” 를 “사무관리” 로 한다.

제30조의3제1호 중 “대장등” 을 “대장, 부대장” 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소대” 를 “의용소방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장등” 을 “대장 및 부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

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소대”를 “의용소방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소대간의”를 “의용소방대 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협조지원”을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지원”으로 한다.

제34조 중 “의소대”를 “의용소방대”로 한다.

제35조 중 “의소대 운영상 필요한”을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위한”으로 한다.

제36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의 용소방대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로 본다.

제3조(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현재 인원이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원에 이르기까지 신규임용을 제한한다.

제4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지역대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용소방대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만료 및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만기 종료일은 해당연도의 6월 31일로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만기 종료일은 해당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 나.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하고, 연합회의 업무, 임원의 직무와 임기, 회의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 나. 연합회 임원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다. 연합회의 총회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249호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합회의 업무)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인천광역시 자치구 및 자치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간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경비지원) 인천광역시는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인천광역시 자치구 및 자치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8호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323호('12.12.24)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55) 및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810-75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 5. 27.

인 천 광 역 시 장**1. 위 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103번지 일원

2. 사 업 명 (변경없음)

○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3. 사업면적 : 25,226.8㎡ (변경없음)**4. 시 행 자 (변경없음)**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4-3

○ 성 명 :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조합장 장 정 남

5.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3년 05월 30일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3년 10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9호

인천 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류5호선 외 2개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5호선, 광로3류6호선, 교통광장78호, 사업명:웅암사거리 지하차도설치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3), 남구청 도시창생과(880-4487), 연수구청 도시계획과(810-86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 5. 27

인 천 광 역 시 장

【도로명 : 광로3류5호선】

1. 변경사유

○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사업 구간 내 편입면적 변경

2.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2번지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종류】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3류5호선)

【명칭】웅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4. 사업의 규모 : L=1,750m, B=40m~48m (변경없음)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5. 29 ~ 2015. 12. 30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변경있음) : 붙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있음) : 붙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도로명 : 광로3류6호선】

1. 변경사유

○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사업 구간 내 편입면적 변경

2.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2번지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종류】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3류6호선)

【명칭】웅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4. 사업의 규모 : L=95m, B=40m~59m (변경없음)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5. 29 ~ 2015. 12. 30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변경있음) : 붙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있음) : 붙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교통광장 78호】

1. 변경사유

○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사업 구간 내 편입면적 변경

2.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2번지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종류】교통광장(78호)

【명칭】광장(옥련IC)

4. 사업의 규모 : A=2,301㎡ (변경없음)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5. 29 ~ 2015. 12. 30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변경있음) : 붙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있음) : 불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편입용지조서 (1)

□ 경로3류5호선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관계	
변경 없음	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18	도	12,528	10,71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1	도	4,153	4,15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0	도	1,360	1,360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4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17	도	58	5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5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19	도	17,553	17,55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6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16	도	306	305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7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3	도	607	607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8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해	366	366							유수지 (공유수면)
당초	9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34	잡	4,124	66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9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9	도	8,674	66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194-229로 합병
당초	1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33	잡	2,459	30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28로 합병
당초	1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8	잡	2,790	1,517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8	도	5,468	2,01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194-233,242와 합병
당초	1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49	잡	26,529	713	자연녹지	㈜송도개발	남동구 간석동 173-4	한국산업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16-3	근저당권 자	
변경	1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7	잡	713	713	자연녹지	㈜송도개발	인천 연수구 송도동 6-1 송 도컨벤시아	(주)하나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 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조정
당초	1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92	잡	15,087	126	자연녹지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한국산업 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권 자	
변경	1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8	잡	179	149	자연녹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10	근저당권 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조정
당초	14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2	잡	219	189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28로 합병
변경 없음	1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4	잡	34	34	자연녹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한국산업 은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 원동 102-2	신탁자	
당초	16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3	도	833	83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01로 합병
당초	17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7	도	102	102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4로 합병
변경 없음	14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48	제	927	522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19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4	제	8	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01로 합병
당초	2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2	도	177	177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01로 합병
당초	2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9	도	2,088	2,08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01로 합병
변경 없음	15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6	도	154	15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편입용지조서 (2)

□ 광로3류5호선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당초	2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3	잡	183	18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6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3	도	183	18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지목변경(잡→도)
변경 없음	17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5	도	173	163	자연녹지	국	해양수산부				
변경 없음	18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8	도	200	200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19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37	도	330	330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당초	27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1	잡	614	61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2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1	도	3,720	3,720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194-202, 203, 204, 209와 합병
당초	28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	잡	793	793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2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	도	793	793	자연녹지	국	인천시				지목변경(잡→도)
당초	29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4	도	5,990	2,392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2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805-1	도	12,622	3,228	자연녹지	국	인천시				194-253으로 전환 후 605-1과 합병
당초	3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6	도	449	449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변경	2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2	도	529	449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194-252로 전환
변경 없음	24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5	임	56	56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당초	3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4	임	268	268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194-254으로 전환 후 605-1과 합병
당초	3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46	잡	2,841	66	자연녹지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2				
변경	25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5	유	31	31	자연녹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연적 정정
변경	26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6	유	35	35	자연녹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연적 정정
변경 없음	27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0	잡	135	135	자연녹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위신화아 이푸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 원동 102-2	신탁자	
당초	35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47	도	1,383	1,38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4로 합병
변경 없음	28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90	도	5,068	6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29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	잡	415	22	자연녹지	국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3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5	잡	18	18	자연녹지	국	기획재정부				
변경 없음	3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7	잡	1,601	22	자연녹지	국	인천시				
당초	40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	도	315	315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3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	도	2,180	2,17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194-47, 207, 247과 합병
당초	41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6	잡	89	79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194-138로 합병
당초	42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7	도	380	37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4-24로 합병
당초	4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38	잡	26	26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33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38	잡	115	105	자연녹지	국	인천시				194-246과 합병
변경 없음	34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10	도	225	14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45	인천 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3	임	554	74	자연녹지	국	인천시				

편입용지조서(3)

□ 광로3류5호선

구분	입 원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변경													605-8로 전환 후 605-1과 합병
당초	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7	임	1,625	494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605-10으로 전환 후 605-1과 합병
당초	4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2	임	4,133	637	자연녹지	인현정 외 2인	남구 주안동 1515-4 광성 아파트 101동 203호	이종식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 아아파트 20동 1704호	근저당권 자	
변경	3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34	임	985	327	자연녹지	이복수 정형	강화 양도면 건평리608-3 구로구 경인로 38길 13	수산업협 동조합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근저당권 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연적 결정
변경	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35	임	658	393	자연녹지	이복수 정형	강화 양도면 건평리608-3 구로구 경인로 38길 13	수산업협 동조합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근저당권 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연적 결정
변경 없음	37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3	제	418	41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없음	38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해	144	144							유수지 (공약수면)
변경 없음	39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728	제	65.9	8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없음	40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727	잡	1,477.1	43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없음	41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5	도	3,900	3,900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42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7	도	30,475	11,783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43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4	도	258	258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없음	44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3	도	174	174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45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2	도	1,894	1,894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46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1	도	187	45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당초	58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5	유	204,596	1,269	자연녹지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소공동 50				
변경	47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67	유	1,180	1,180	자연녹지	㈜디씨알이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46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근저당권 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연적 결정
변경 없음	48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6	도	3,090	3,090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없음	49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4	유	16,824	28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당초	61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7	유	57,494	24	자연녹지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한국외환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세종로지점)	근저당권 자	
변경	50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65	유	24	24	자연녹지	㈜디씨알이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46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근저당권 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연적 결정
변경 없음	51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8	제	6,642	8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52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12	도	2,771	2,771	자연녹지	국	인천시				
당초	64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1	유	28,012	363	자연녹지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소공동 50				
변경	53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66	유	362	362	자연녹지	㈜디씨알이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46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 남구 송의동 131-1	근저당권 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연적 결정
변경 없음	54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26	제	16,268	8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편입용지조서(1)

□ 광로3류6호선

구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변경 없음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5	도	173	10	자연녹지	국	해양수산부				
당초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4	도	5,990	517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194-253로 합병 후 605-1로 합병
변경 없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90	도	5,068	7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6	잡	89	10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138	잡	115	10	자연녹지	국	인천시				194-138로 합병
당초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07	도	380	6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4	도	2,180	6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194-24로 합병
변경 없음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62	도	767	16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10	도	225	82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3	임	554	480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605-8으로 전환 후 605-1로 합병
당초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7	임	1,625	1,131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605-10으로 전환 후 605-1로 합병
당초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2	임	4,133	206	자연녹지	이현정 외 2인	남구 주안동 1515-4 광성 아파트 101동 203호	이종식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 아아파트 20동 1704호	근저당권자	
변경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35	임	658	265	자연녹지	이복수 점청	강화 양도면 건평리608-3 구로구 경안로 38길 13	수산업협 동조합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근저당권자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조정
당초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05-1	도	34	34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05-1	도	12,622	4,453	자연녹지	국	인천시				194-253, 254, 605-2, 4, 5, 7, 8, 9, 10과 합병
당초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23	임	275	275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산2-16로 합병
당초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05-5	도	31	31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605-1로 합병
당초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24	임	458	458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산2-16로 합병
당초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6	임	26	26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605-9으로 전환 후 605-1로 합병
당초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05-4	도	196	196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605-1로 합병
당초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05-2	도	2,015	1,302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605-1로 합병
당초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8	임	182	3	자연녹지	국	인천시				
변경													산2-11로 합병, 605-7로 전환, 605-1로 합병

☐ 78호 광장

- 8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80호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결과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5.6.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5. 20.

인 천 광 역 시 장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결과 보고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484,921,418	100.00%	6,976,847,060	100.00%	1,508,074,358	21.62%
일	반 회 계	5,774,756,211	68.06%	4,683,331,394	67.13%	1,091,424,817	23.30%
특	별 회 계	2,710,165,207	31.94%	2,293,515,666	32.87%	416,649,541	18.17%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567,006,043	18.47%	1,202,667,857	17.24%	364,338,186	30.29%
	상 수 도 사 업	307,095,569	3.62%	266,049,543	3.81%	41,046,026	15.43%
	하 수 도 사 업	150,735,000	1.78%	150,735,000	2.16%	0	0.00%
	경 제 자 유 구 역 사 업	897,926,673	10.58%	574,634,513	8.24%	323,292,160	56.26%
	지 역 개 발 기 금	211,248,801	2.49%	211,248,801	3.03%	0	0.00%
기	타 특 별 회 계	1,143,159,164	13.47%	1,090,847,809	15.64%	52,311,355	4.8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22,430,771	0.26%	22,430,771	0.32%	0	0.00%
	인 천 대 학 교 운 영	4,950,760	0.06%	4,950,760	0.07%	0	0.00%
	의 료 급 여 기 금	265,243,909	3.13%	282,835,163	4.05%	△17,591,254	△6.22%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9,577,853	0.35%	177,853	0.00%	29,400,000	16530.51%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43,849	0.00%	143,849	0.00%	0	0.0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2,226,272	0.38%	32,004,497	0.46%	221,775	0.69%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08,421	0.00%	108,421	0.00%	0	0.00%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5,189	0.00%	55,189	0.00%	0	0.00%
	도 시 교 통 사 업	36,159,912	0.43%	32,465,493	0.47%	3,694,419	11.38%
	광 역 교 통 시 설	49,724,422	0.59%	46,600,000	0.67%	3,124,422	6.70%
	도 시 철 도 사 업	305,290,720	3.60%	279,744,634	4.01%	25,546,086	9.13%
	도 시 개 발	5,610,000	0.07%	5,610,000	0.08%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965,907	0.01%	841,000	0.01%	124,907	14.85%
	기 반 시 설	2,040,000	0.02%	2,040,000	0.03%	0	0.00%
	지 하 도 상 가	10,058,280	0.12%	10,058,280	0.14%	0	0.00%
	아 시 아 경 기 대 회	378,572,899	4.46%	370,781,899	5.31%	7,791,000	2.10%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484,921,418	100.00 %	6,976,847,060	100.00 %	1,508,074,358	21.62%
세 입	지 방 세 수 입	2,189,101,000	25.80 %	2,149,501,000	30.81 %	39,600,000	1.84%
	보 통 세	1,837,635,000	21.66 %	1,798,035,000	25.77 %	39,600,000	2.20%
	목 적 세	330,974,000	3.90 %	330,974,000	4.74 %	0	0.00%
	지 난 년 도 수 입	20,492,000	0.24 %	20,492,000	0.29 %	0	0.00%
	세 외 수 입	3,161,515,438	37.26 %	2,479,668,280	35.54 %	681,847,158	27.5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279,496,678	15.08 %	924,646,984	13.25 %	354,849,694	38.38%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882,018,760	22.18 %	1,555,021,296	22.29 %	326,997,464	21.03%
	지 방 교 부 세	330,759,499	3.90 %	321,767,986	4.61 %	8,991,513	2.79%
	국 고 보 조 금	1,624,291,882	19.14 %	1,519,827,895	21.78 %	104,463,987	6.87%
	지 방 채	1,179,253,599	13.90 %	506,081,899	7.25 %	673,171,700	133.02%
세 출	일 반 공 공 행 정	1,595,495,520	18.79 %	881,782,444	12.64 %	712,713,076	80.83 %
	공공질서및안전	34,722,179	0.41 %	34,476,046	0.49 %	246,133	0.71 %
	교 육	532,861,247	6.28 %	530,026,247	7.60 %	2,835,000	0.53 %
	문 화 및 관 광	699,414,920	8.24 %	683,341,471	9.79 %	16,073,449	2.35 %
	환 경 보 호	537,705,155	6.34 %	495,562,208	7.10 %	42,142,947	8.50 %
	사 회 복 지	1,704,660,033	20.09 %	1,584,466,715	22.71 %	120,193,318	7.59 %
	보 건	107,163,659	1.26 %	109,766,944	1.57 %	△2,603,285	△2.37 %
	농림해양수산	102,352,132	1.21 %	104,659,347	1.50 %	△2,307,215	△2.20 %
	산업·중소기업	92,182,955	1.09 %	90,068,534	1.29 %	2,114,421	2.35 %
	수 송 및 교 통	1,173,322,301	13.83 %	1,071,551,498	15.36 %	101,770,803	9.50 %
	국토및지역개발	1,206,317,875	14.22 %	852,024,438	12.21 %	354,293,437	41.58 %
	과 학 기 술	158,442,287	1.87 %	14,291,404	0.20 %	144,150,883	1008.65 %
	예 비 비	40,823,443	0.48 %	48,840,119	0.70 %	△8,016,676	△16.41 %
	기 타	500,457,712	5.90 %	475,989,645	6.82 %	24,468,067	5.14 %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5,774,756,211	100.00 %	4,683,331,394	100.00 %	1,091,424,817	23.30%
세 입	지 방 세 수 입	2,189,101,000	37.91 %	2,149,501,000	45.90 %	39,600,000	1.84%
	보 통 세	1,837,635,000	31.82 %	1,798,035,000	38.39 %	39,600,000	2.20%
	목 적 세	330,974,000	5.73 %	330,974,000	7.07 %	0	0.00%
	지 난 년 도 수 입	20,492,000	0.35 %	20,492,000	0.44 %	0	0.00%
	세 외 수 입	1,252,272,181	21.69 %	977,568,833	20.87 %	274,703,348	28.10%
	경상적세외수입	63,804,516	1.10 %	63,541,872	1.36 %	262,644	0.41%
	임시적세외수입	1,188,467,665	20.58 %	914,026,961	19.52 %	274,440,704	30.03%
	지 방 교 부 세	326,073,375	5.65 %	319,886,596	6.83 %	6,186,779	1.93%
	국 고 보 조 금	1,128,091,655	19.53 %	1,086,374,965	23.20 %	41,716,690	3.84%
	지 방 채	879,218,000	15.23 %	150,000,000	3.20 %	729,218,000	486.15%
세 출	일 반 공 공 행 정	1,383,262,768	23.95 %	670,549,692	14.32 %	712,713,076	106.29 %
	공공질서및안전	34,722,179	0.60 %	34,476,046	0.74 %	246,133	0.71 %
	교 육	510,423,817	8.84 %	507,588,817	10.84 %	2,835,000	0.56 %
	문 화 및 관 광	321,559,243	5.57 %	313,276,794	6.69 %	8,282,449	2.64 %
	환 경 보 호	146,301,968	2.53 %	142,985,262	3.05 %	3,316,706	2.32 %
	사 회 복 지	1,439,442,794	24.93 %	1,301,658,222	27.79 %	137,784,572	10.59 %
	보 건	107,163,659	1.86 %	109,766,944	2.34 %	△2,603,285	△2.37 %
	농림해양수산	102,352,132	1.77 %	104,659,347	2.23 %	△2,307,215	△2.20 %
	산업·중소기업	91,942,195	1.59 %	89,827,774	1.92 %	2,114,421	2.35 %
	수송및교통	793,070,397	13.73 %	722,918,076	15.44 %	70,152,321	9.70 %
	국토및지역개발	285,940,233	4.95 %	283,268,767	6.05 %	2,671,466	0.94 %
	과 학 기 술	158,442,287	2.74 %	14,291,404	0.31 %	144,150,883	1008.65 %
	예 비 비	40,823,443	0.71 %	48,840,119	1.04 %	△8,016,676	△16.41 %
	기 타	359,309,096	6.23 %	339,224,130	7.24 %	20,084,966	5.92 %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1,567,006,043	100.00 %	1,202,667,857	100.00 %	364,338,186	30.29%
세 입	세 외 수 입	1,431,837,043	91.37 %	1,070,588,857	89.02 %	361,248,186	33.74%
	경상적세외수입	1,142,705,124	72.92 %	817,739,849	67.99 %	324,965,275	39.74%
	임시적세외수입	289,131,919	18.45 %	252,849,008	21.02 %	36,282,911	14.35%
	지 방 교 부 세	107,000	0.01 %	0	0.00 %	107,000	100.00%
	국 고 보 조 금	41,562,000	2.65 %	38,579,000	3.21 %	2,983,000	7.73%
	지 방 채	93,500,000	5.97 %	93,500,000	7.77 %	0	0.00%
세 출	일 반 공 공 행 정	211,232,752	13.48 %	211,232,752	17.56 %	0	0.00 %
	환 경 보 호	391,403,187	24.98 %	352,576,946	29.32 %	38,826,241	11.01 %
	산 업 · 중 소 기 업	240,760	0.02 %	240,760	0.02 %	0	0.00 %
	국 토 및 지 역 개 발	840,183,825	53.62 %	518,304,967	43.10 %	321,878,858	62.10 %
	기 타	123,945,519	7.90 %	120,312,432	10.00 %	3,633,087	3.02 %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1,143,159,164	100.00 %	1,090,847,809	100.00 %	52,311,355	4.80%
세 입	세 외 수 입	477,406,214	41.76 %	431,510,590	39.56 %	45,895,624	10.64%
	경상적세외수입	72,987,038	6.38 %	43,365,263	3.98 %	29,621,775	68.31%
	임시적세외수입	404,419,176	35.38 %	388,145,327	35.58 %	16,273,849	4.19%
	지 방 교 부 세	4,579,124	0.40 %	1,881,390	0.17 %	2,697,734	143.39%
	국 고 보 조 금	454,638,227	39.77 %	394,873,930	36.20 %	59,764,297	15.14%
	지 방 채	206,535,599	18.07 %	262,581,899	24.07 %	△56,046,300	△21.34%
세 출	교 육	22,437,430	1.96 %	22,437,430	2.06 %	0	0.00 %
	문 화 및 관 광	377,855,677	33.05 %	370,064,677	33.92 %	7,791,000	2.11 %
	사 회 복 지	265,217,239	23.20 %	282,808,493	25.93 %	△17,591,254	△6.22 %
	수 송 및 교 통	380,251,904	33.26 %	348,633,422	31.96 %	31,618,482	9.07 %
	국 토 및 지 역 개 발	80,193,817	7.02 %	50,450,704	4.62 %	29,743,113	58.95 %
	기 타	17,203,097	1.51 %	16,453,083	1.51 %	750,014	4.56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5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①단계 준공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66호(2012.11.09.)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91호(2012.12.24.)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①단계” 개발 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①단계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
- 면 적 : 전체 사업 면적 17,816,464.4㎡ 중 2-①단계 4,696,704.0㎡

○ 용도별 면적

구 분	계		2-①단계 (㎡)	2-②단계 (㎡)	2-③단계 (㎡)	비고
	면적(㎡)	구성비(%)				
합 계	17,816,464.4	100.0%	4,696,704.0	8,840,605.4	4,279,155.0	
주 택 용 지	2,346,453.2	13.2%	1,895,940.2	450,513.0	-	
단독주택용지	514,897.9	2.9%	325,506.9	189,391.0	-	
공동주택용지	1,817,473.8	10.2%	1,566,866.8	250,607.0	-	
근생시설용지	14,081.5	0.1%	3,566.5	10,515.0	-	
상업업무시설용지	1,007,666.6	5.7%	413,703.7	573,139.9	20,823.0	
상업시설용지	276,155.5	1.6%	183,546.5	92,609.0	-	
업무시설용지	480,530.9	2.7%	-	480,530.9	-	
주상복합용지	230,157.2	1.3%	230,157.2	-	-	
지원시설용지	20,823.0	0.1%	-	-	20,823.0	
산 업 시 설 용 지	1,521,714.7	8.5%	-	-	1,521,714.7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506,974.0	2.8%	-	-	506,974.0	
화훼산업용지	418,725.7	2.4%	-	-	418,725.7	
R&D및 첨단산업용지	596,015.0	3.3%	-	-	596,015.0	
공공시설용지	8,791,234.9	49.3%	2,387,060.1	5,161,160.5	1,243,014.3	
도로	2,741,315.5	15.4%	1,028,960.7	1,332,646.5	379,708.3	
공원	1,815,821.3	10.2%	421,839.3	1,313,698.0	80,284.0	
녹지	1,472,421.1	8.3%	321,984.1	574,753.0	575,684.0	
광장	222,606.0	1.2%	-	95,672.0	126,934.0	
공공공지	73,521.9	0.4%	22,947.9	49,009.0	1,565.0	
하천	1,474,915.7	8.3%	48,350.7	1,426,565.0		

구분	계		2-①단계 (㎡)	2-②단계 (㎡)	2-③단계 (㎡)	비고
	면적(㎡)	구성비(%)				
유수지	124,332.0	0.7%	—	124,332.0	—	
철도시설	22,542.0	0.1%	—	22,542.0	—	
주차장	112,881.9	0.6%	37,868.9	68,599.0	6,414.0	
복합환승센터	7,500.0	0.1%	—	7,500.0		
학교시설	357,570.4	2.0%	311,570.4	46,000.0	—	
하수도시설	79,102.9	0.4%	79,102.9	—	—	
전기공급설비	24,700.4	0.1%	11,215.4	5,500.0	7,985.0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13,793.1	0.1%	8,248.1	2,610.0	2,935.0	
가스공급설비	39,795.0	0.2%	100.0	25.0	39,670.0	
주유소	4,451.0	0.1%	—	4,451.0	—	
공영차고지	21,835.0	0.1%	—	—	21,835.0	
종교시설	18,300.8	0.1%	13,450.8	4,850.0	—	
체육시설	40,413.1	0.2%	6,600.1	33,813.0	—	
공공업무시설	36,521.6	0.2%	14,089.6	22,432.0	—	
근린공공시설	31,183.2	0.2%	17,985.2	13,198.0	—	
문화·의료·복지시설	52,589.6	0.3%	40,282.6	12,307.0	—	
보육시설	3,121.4	0.1%	2,463.4	658.0	—	
투자유치용지	3,941,168.0	22.1%	—	2,622,734.0	1,318,434.0	
복합용지	33,058.0	0.2%	—	33,058.0	—	
유보지	175,169.0	1.0%	—	—	175,169.0	

4. 준공일 : 2012. 12. 27.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국가(지자체) 귀속분 총괄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 폭 원 : 4~50m · 노선수 : 252개 · 연 장 : 47km	m ²	1,028,960.7	본 시설물 관리청 (인천광역시)에 무상귀속
교량	· 내부수로교 6개소 · 보도육교 5개소 · 중봉교 1개소 · 심곡천횡단교량 1개소	개소	13	
지하차도	· 중봉지하차도 1개소 · 관리사무소 포함	개소	1	
경관시설	· 미디어파사드	개소	1	
	· 조형계양대	개소	42	
공원	· 문화공원 2개소 · 근린공원 6개소 · 어린이공원 10개소	m ²	421,839.9	
녹지	· 완충녹지 74개소 · 경관녹지 5개소	m ²	321,984.1	
상수도	· D25 ~ D800	m	53,021	
하수도	· 우수관 D250~D1200 · 압거 1.5×1.8~3.0×2.0 · 오수관 D150~D1100	m	138,679	
가로등 신호등	· 가로등, 공원등, 신호등	주	2,976	
	· 점멸기, 제어기	면	157	
하수처리장	· 기존 : Q=26,000m ³ · 증설 : Q=39,000m ³	개소	1	
크린넷	· 집 하 장 : 3개소 · 이송관로 : 25.17km · 투 입 구 : 128개소	식	1	

6. 관계도서 열람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 032-453-76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032-540-172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2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부평문화원(대표 빈종구)에서 제출한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모집목적 :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지원
2.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 현금 및 물품 99,500천원
3. 모집지역 : 인천, 서울
4. 모집방법 : 모금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5. 모집기간 : 2013. 6. 1 ~ 2013. 11. 30
6.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7. 모집비용 : 12,000천원(모집금액의 15%이내 가능)
8. 기타사항 :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일전이라도 모집금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
9.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42-3(032-505-9001)

인천광역시공고 2013-638호

긴급 주거비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긴급 위기 저소득가정의 주거안정 및 긴급 주거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우수한 비영리 민간법인(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 5.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긴급 주거비 지원사업

나. 사업금액 : 금117,000,000원(금일억일천칠백만원)

다. 사업내용

1) 사회취약계층 긴급 주거비 지원사업

○ 긴급한 사유로 임대보증금 소진된 가정

○ 임대료가 연체되어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

2) 주거복지관련 사업 홍보

○ 사업내용, 지원사례, 유관기관 협력사례 등 홍보

3) 주거복지관련 상담과 사례관리 사업

○ 사회취약계층 주거관련 상담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4) 그 밖에 주거복지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사업기간 : 2013. 6. ~ 2013. 12. 31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나. 설립목적 및 정관 목적사업에 주거복지의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다. 임차료 및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 라. 주거복지사업 전담인력이 2인 이상인 법인이나 단체
- 마.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기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참가할 수 없음

3. 공모일정

- 가. 공모 공고일 : 2013.5.20(월)
- 나. 사업설명회 : 별도 없음
(공고 기간내 시 건축계획과 방문 법인에 한하여 설명)
- 다. 접수기간 : 2013.5.27.(월) ~ 5.28(화)
- 라. 적격심사 및 선정 : 2013.5.29.(수) ~ 6.7(금)
- 마. 선정결과 발표 : 2013.6.10(월)
- 바. 협약 체결 : 2013.6.10.(월) ~ 6.14(금)

4. 사업계획 신청

- 가. 신청기간 : 2013.5.27.(월) ~ 5.28(화) 18:00까지
- 나.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민원동 3층 304호) ☎440-4743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인터넷접수〔jjkk@korea.kr〕
- 라. 제출서류
 - 1)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 및 일반현황(상근직원 명단 포함) 각 2부
 - 2) 지원사업 계획서 2부
 - 3) 위 1)~2)의 신청서류를 작성한 CD 또는 USB 1개(방문제출시)
 - 4) 정관 또는 회칙 사본 2부
 - 5) 최근 1개년간 임차료 및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실적 각 2부
 - 6) 비영리민간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2부

5. 사업자 선정 및 발표

- 가. 사업자 선정 : 적격심사 및 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나. 선 정 방 법 : 면접심사 및 평가표에 의거 최고득점자를 우선 선정
- 다. 선정결과 발표 : 우리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6. 사업 협약체결, 사업시행 및 보고 정산

- 가. 선정된 사업자는 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나. 협약체결에 따른 공증,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함
- 다. 협약체결 이후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라. 사업운영을 완료할 때에는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 가.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업체 부담이며, 계약기간 내 협약 미체결 시
선정 무효 처리함
- 나. 사업비, 기간, 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라. 제출된 계획서에 포함된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한은 인천시장에 있음
- 마.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주거문화기획팀(032-440-474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4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 5. 22.

인천광역시장

☐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비고
당초	제2007-0- 인천광역시-13호 (2007.2.14)	한국민간방법 기동순찰대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17-4	최인식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통한 청소년선도 - 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	
변경	제2007-0- 인천광역시-13호 (20013.5.22)	상동	상동	김만길	상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48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고기간 : 2013. 5. 23. ~ 5. 30. (8일간)

□ 공고내용

가. 참여사업

연번	사업명	규 모	추정가액 총액	발주부서	선정감정 평가업자
1	북항배후부지 공유재산매각	○ 위치: 서구 원창동 388-4 일원 ○ 감정평가대상: 9필지(75,952.3㎡)	328억 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2개 업자
		재 산 의 표 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원창동	388-4	잡	4,165.7
		원창동	388-5	잡	4,142.4
		원창동	388-6	잡	1,082.8
		원창동	388-8	잡	1,534.7
		원창동	388-9	잡	91.3
		원창동	391-3	잡	12,392.2
		원창동	391-4	잡	19,091.1
		원창동	391-5	잡	16,965.9
		원창동	391-6	잡	16,486.2
		합계			75,952.3
					32,788,997

나. 신청자격

-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 ②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 ③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주·분사무소 포함)
- ④ 소속 감정평가사 수 : 공고일 현재 3인 이상
(심사자포함 자격취득이후 평가 실무경력 1년 이상 감정평가사)

다. 신청기간 : 2013. 5. 23. ~ 5. 30 (18:00)

라.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시청 내 IDC건물 1층)

마. 제출서류

-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서식 1)
- ② 법인등기·인가증(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 ③ 업무제안서(서식 2)
- ④ 업무제안서의 수행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의사항** :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계획 작성시 해당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이름 포함)를 표시하거나 나타낼 수 있는 글자, 기호, 표식, 문양 등 일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시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사업 1회 이상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 최종 내용 이후 변동사항만 제출 및 변동 사항 없으면 생략가능 (단, 평가실적 목록은 반드시 제출)**

□ 기타 유의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심의 선정(발주부서 개별통지)

나. 참여 감정평가업자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이 2년 이상이며, 동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 업무제안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 준용)

※ 감정평가 수행계획서 및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계획은 구분 하여 각각 2매 이내 구체적인 작성

라. 업무제안서 내용 및 제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선정 후 계약체결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차 순위자가 선정업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바. 참여 신청접수(우편물 접수포함)는 **2013. 5. 30(목). 18:00까지**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입니다.

아.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발주부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2-440-4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440-459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감정평가업자 참여 신청서

☐ 참 여 사 업 :

☐ 감정평가업자 :

구 분	내 용	비 고
감정평가업자		
주 소		
대 표 자		
감정평가사 수		
전 화 / FAX		
설 립 일		
기 타		※ 소유자 추천 등 제외신청 사유 기재

※ 상기 법인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
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동 제4조 규정에 의거 “참여 신
청서”를 제출 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감정평가법인(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업 무 제 안 서

□ 참여사업 :

감정평가업자		사무소 소재지	
감정평가사 수 (명)	개인		
	법인	주사무소	
		분사무소	
수행능력 등	○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자격취득 이후) ○ 평가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및 증빙자료(작성 예시 참조) ○ 보험 등 가입여부 ○ 행정처분 및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여부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징계유무확인서 등) ○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등 : 별지 2장 이내로 구체적 작성		
감정평가 수행계획	○ 참여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평가일정 등 : 별지 2장 이내 구체적 작성		
기타 의견	※ 소유자 추천 등 제외신청 사유 기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 ○ 감정평가법인(인)

※ 본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업무제안서(수행능력 등) 작성 서식(예시)

평가실적 (최근 3년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연번	사 업 명	발주부서	감정평가서 제 출 일	감정평가금액	비 고
총계					
1					
2					
3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정부투자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평가실적 합계는 상단 총계 란에 반드시 기재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자격취득 이후)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감정평가 실무경력		비 고
				근무기관	기 간(년 월)	
1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 (년 월)	
2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 (년 월)	
3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 (년 월)	
계	평균 실무경력 : 년 월					

※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 평균 실무경력 = *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4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 5. 22.

인천광역시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제2013-0- 인천광역시-13호	저어새섬 사람들	김형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600-6 (3층)	- 남동유수지저어새모니터링기록 - 송도갯벌 철새모니터링 -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013.2.21	신 규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51호

2013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동산개발업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에 의거 2013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 5.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 목 : 2013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2. 공고기간 : 2013. 5. 23 ~ 6. 7

3. 대 상 자

가. 성 명 : 김영국[에스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나. 등록번호 : 600718-1*****

다.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48번길 29, 000호(수택동, 대우아파트)

4. 당초 통보내용

가.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 귀 사(하)께서 등록하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의하여 등록사업자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련 자료를 2012. 5. 31까지 우리시(토지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내용 : 등록요건의 적합 및 변경사항 유무 등

2). 자료제출기간 : 2013.05.02 ~ 05.31

3). 제출서류

- 붙임1(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등록요건 현황)작성.

-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 최근1개월 이내 발행된 것.

※ 등록요건 변경(자본금, 임원, 전문인력)내용이 있을 경우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2-440-8682) 또는 이메일(제출서류 스캔하여 제출 handam@korea.kr)

다. 아울러 위 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할 경우 「같은 법」 제24조(영업정지 등)제1항 및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대상 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등록요건 현황

2.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준수사항

3.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끝.

☞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2-440-4597~8)

[붙임1]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등록요건 현황

- 상 호 : □법인 □개인
○ 등 록 번 호 :
○ 전 화 : 담당자 :
FAX :
○ 대 표 자 : (인)
○ 제 출 일 자 : 2012. . .

항 목	내 용	비 고																																			
1. 상호 및 소재지	○ 상 호 : - 소재지 :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말소사항 포함)																																				
2. 자본금 및 임원	○자본금 : 천원 ○임원(대표자 포함)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일련 번호</th><th>직위</th><th>성명 및 주민등록번호</th><th>취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td>1</td><td></td><td></td><td></td><td></td></tr> <tr><td>2</td><td></td><td></td><td></td><td></td></tr> <tr><td>3</td><td></td><td></td><td></td><td></td></tr> <tr><td>4</td><td></td><td></td><td></td><td></td></tr> <tr><td>5</td><td></td><td></td><td></td><td></td></tr> <tr><td>6</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일련 번호	직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취임	비고	1					2					3					4					5					6					
일련 번호	직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취임	비고																																	
1																																					
2																																					
3																																					
4																																					
5																																					
6																																					
3. 전문인력	○ 전문인력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일련 번호</th><th>직위</th><th>성명 및 주민등록번호</th><th>자격유지일자 (취득일~)</th><th>비고</th></tr> </thead> <tbody> <tr><td>1</td><td></td><td></td><td></td><td></td></tr> <tr><td>2</td><td></td><td></td><td></td><td></td></tr> <tr><td>3</td><td></td><td></td><td></td><td></td></tr> <tr><td>4</td><td></td><td></td><td></td><td></td></tr> <tr><td>5</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일련 번호	직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자격유지일자 (취득일~)	비고	1					2					3					4					5										
일련 번호	직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자격유지일자 (취득일~)	비고																																	
1																																					
2																																					
3																																					
4																																					
5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1부.(최근1개월이내발행)

[붙임2]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준수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행 및 보고사항과 금지 및 제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과태료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1. 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청

①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번호(주민번호), 국적(소속국가명)

②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 관련규정 : 법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영 제11조(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 대상), 시행규칙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2. 등록사업자 보고의무

① 사업실적 : 매년 1월 10일까지 보고 (표시,광고 실적 같이 제출)

②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변경시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
(개인인 경우 자본금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 별지 제15호서식

※ 관련규정 : 법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시행규칙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3. 등록요건 실태조사

① 보고시기 : 매년 월 일경 까지 실태조사서 제출

② 제출서류 : 실태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 금지 및 제한사항

1. 부동산개발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사항을 표시·광고(단 다른 법률 규정 있는 경우 예외)

2. 타인에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개발을 하게 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3.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수 없음

4. 기타 금지행위(거짓,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 관련규정 : 법제8조, 영제12조(표시·광고에 관한사항), 법제9조(이중등록의금지),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금지행위) 등

□ 기타 사항

1.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경우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음
2. 등록증은 주된 영업소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며, 그 외 영업소에는 등록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함
3. 기타 이행 사항(양도·합병·상속·폐업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

※ 관련규정 : 법제4조제4항, 영제7조(협약체결에 의한 공동개발시 준수사항), 영제8조(등록증 게시의무), 법제11조부터 14조까지, 규칙제10조부터13조까지(양도·합병·상속에 관한 사항), 법제15조, 규칙제14,15조(폐업신고), 법제18조(실태조사) 등

□ 위반시 처벌규정

1. 기재사항 변경신청 위반 : 25만원
 2. 등록사업자 보고의무 위반 : 1년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관련규정 : 제24조(영업정지 등),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36조~38조(벌칙), 제40조(과태료), 영제26조제3항 별표2(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영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개발업 관련한 자료(서식 등)는 naver 또는 daum 등에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main.do>)을 검색 후 클릭 → 맨 위 화면상 “부동산개발업” 클릭 → 화면 좌측에 “알림마당” 클릭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32-440-4597~8)

개발업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부동산개발 표시·광고 의무사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2호,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No	표시항목	표시내용 예시	비고
1	상호·명칭	“부동산개발업자 00사”, “00시(도) 등록번호 00호”	매회표시 하여야 함
2	주된 영업소	“00시(도) 00구(시) 00동(리) 소재”	
3	공동사업주체	“지주공동개발”, “부동산개발업자 00사”, “00시(도) 등록 번호 00호”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성명00”	
4	인·허가등 사항	“00년 00월 00일 건축허가 취득(00시 허가번호 00호)”	
5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규모	(공급대상물) : “00군 00면 00리 00번지 임야00㎡”, “건축물용도 상가”, “분양(임대)규모00㎡”	2회이상표시 생략가능 (※참조)
6	공사의 착공, 준공 및 공급예정일	(사업일정) : “00년 00월 00일 착공”, “00년 00월 00일 준공”, “00년 00월 00일 분양(임대)”	
7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거래규제사항	(토지의 용도 및 제한) : “농림지역”, “준공업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8	대지소유권 확보	“대지소유권 00%확보”	
9	소유권이전형태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등기”, “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10	공급대금관리자의 명칭 및 관계	(분양대금 관리방법) : “00은행 신탁관리”, “시행사 자체관리”	
11	시공업체·공급 대행사의 명칭	(관련업체) : “시공사 00사”, “분양대행사 00사”, “신탁사 00사”, “분양보증기관 00사”	
12	신탁계약·분양 보증기관의 명칭		
13	분양신고번호, 일자, 분양가격	건분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양광고에는 당해법령에서 정 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함	
14	분양·회원모집총인 원, 객실별인원	(분양정보) : “분양신고승인번호 00시(군) 00호” ※ 평형별(형태별) 분양가격 및 모집인원은 별도 기재 타 법령에 의해 광고한 사항을 밝힌 경우 불포함 가능	

※ 5 ~ 14의 항목은 두 번째 이후의 표시·광고시 관련내용이 공급사업장(모델하우스/전분 등)을 설치하고 공급안내 등을 하는 장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밝힌 경우는 생략 가능

☐ 위반시 제재

○ 미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 위반시

- 시정조치(법제22조제1항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6조 제2호)
 - 영업정지 3월, 6월, 1년(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과태료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32-440-4597~8)

[붙임3]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처리기간
				즉시
보 고 자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 등록번호	
	⑤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 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 업소 소재지)	()	⑥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 우: 자산관리회사 또 는 집합투자업자의 전 화번호)	()
변경내용				
구 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변경 사유
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임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자본금(개인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보고자(대표자)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및 제2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고자(대표자)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제2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등록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임원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직 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호주성명 및 관계	비 고
			주 소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원(대표자, 이사, 감사 등) 중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확 인 자 상 호

대표자 (인)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동의서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다 음 -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증 교부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협회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무
9. 기타 부동산개발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

연번	성명	생년월일	일시	서명

[붙임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19>

(앞 쪽)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 등록번호	
	⑤ 영업소 소재지(특 수목적법인인 경우: 자 산관리회사 또는 집합 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⑥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 합투자업자의 전화번 호)	()
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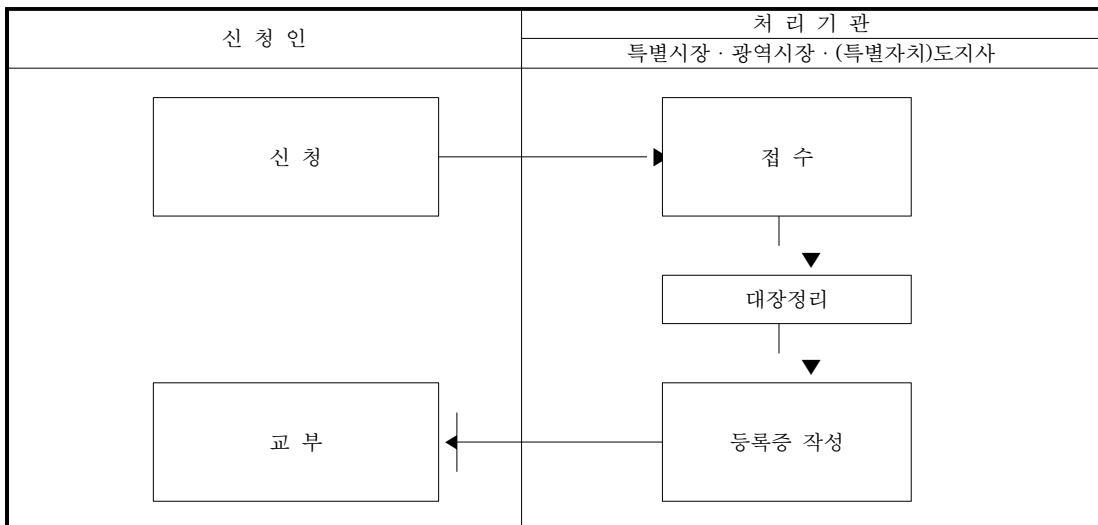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초본)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등록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임원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직 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호주성명 및 관계	비 고
			주 소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원(대표자, 이사, 감사 등) 중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확 인 자 상 호

대표자 (인)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동의서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다 음 -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증 교부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협회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무
9. 기타 부동산개발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일시	서명

[붙임5]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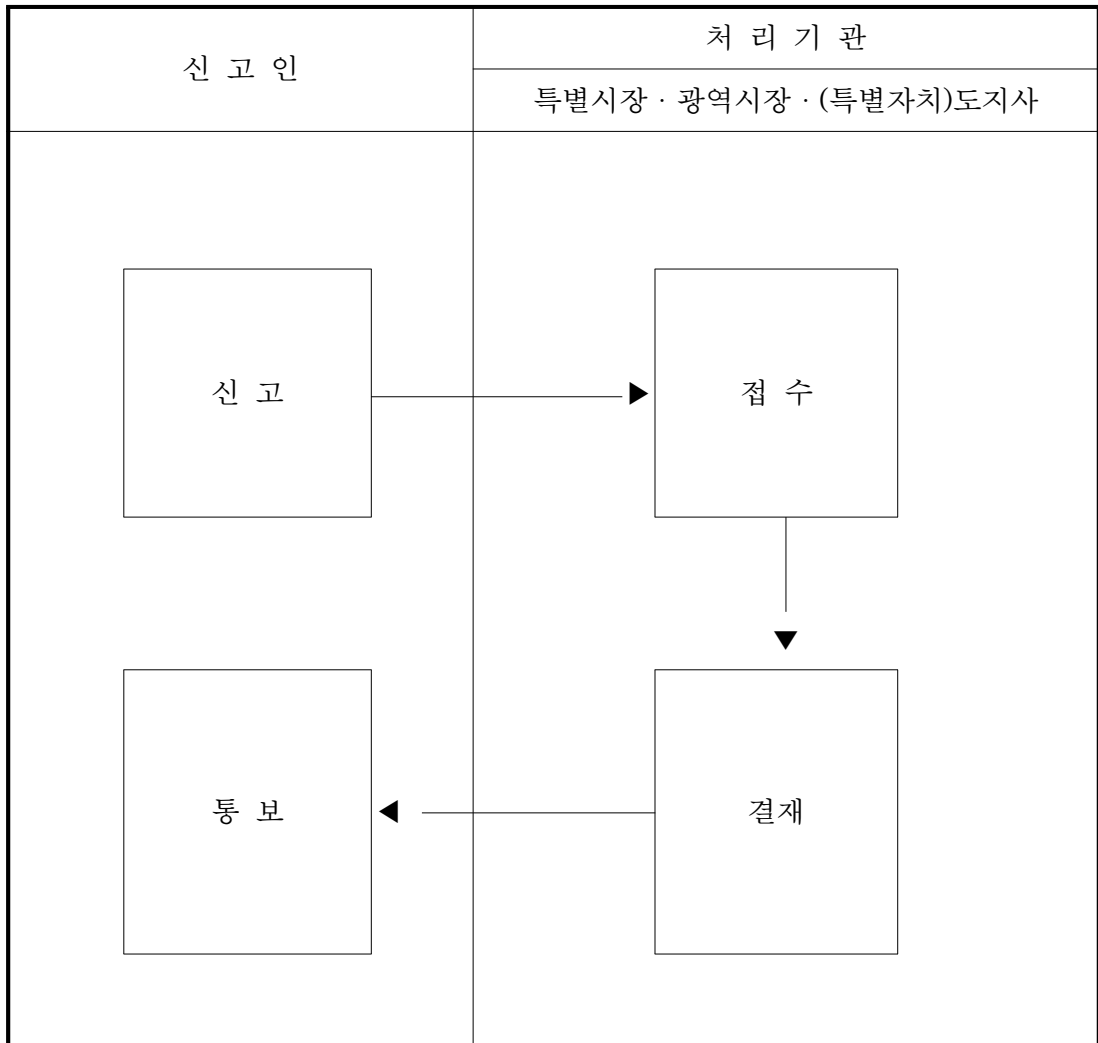
(앞 쪽)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 합투자업자의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	④ 전화번호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 합투자업자의 전화번호)	()
	⑤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 속 국가명	
⑦ 등록번호				
⑧ 폐업사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65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 5. 23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1. 등록번호 : 2012-0-인천광역시-6호
2. 단체명칭 : 힐링에듀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909-7
4. 대표자 : 박홍규
5. 주된 사업
 -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조기정착 위한 언어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일자리 연계사업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
 - 다문화교육기관 구성원간의 교류 및 타 교육기관과의 교류
 -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교육, 학습지원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권익보호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
6. 등록년월일 : 2013. 5. 23. (최초등록 2012. 2. 7)
7. 등록구분 : 변경등록(단체명칭 변경)

□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3-153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 : 미단시티 근린공원 제11호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 : 미단시티(운북레저단지) 근린공원 제11호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до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62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032-453-7734) 및 인천광역시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80), 인천도시공사(☎032-260-54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2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원조성계획 결정

○ 사업명 :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 공원조성사업

공원명	공원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 원	근린공원 제11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산97번지 일원	66,348.9	-	66,348.9	공원조성 계획변경

2. 공원조성계획(변경) 사유서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 원 (근린공원 제11호)	○ 건축면적(간이화장실) : 당초 0.0㎡ → 변경58.1㎡ (바닥면적 51.3㎡, 출입구 6.8㎡) ○ 도로 및 광장 면적 : 당초 6,727.1㎡ → 변경6,739.2㎡(증12.1㎡) ○ 녹지면적 : 당초 55,467.9㎡ → 변경55,397.7㎡(감70.2㎡)	○ 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

3.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시설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시설 면적 (㎡)	규모	건축물		공작 물 (기)	시설 면적 (㎡)	규모	건축물		기타	공작 물 (기)	
			바닥 면적 (㎡)	연면 적 (㎡)				바닥 면적 (㎡)	연면 적 (㎡)			
계	66,348.9	-	-	-	104	66,348.9	-	-	-	-	105	
도로 및 광장	6,727.1	-	-	-	-	6,739.2	12.1	-	-	12.1	-	간이화장실 연결부(도로)
조경 시설	-	-	-	-	36	-	-	-	-	-	36	변경없음
휴양 시설	2,334.7	-	-	-	52	2,334.7	-	-	-	-	52	변경없음
운동 시설	1,601.6	-	-	-	15	1,601.6	-	-	-	-	15	변경없음
편의 시설	217.6	-	-	-	1	275.7	58.1	51.3	51.3	6.8	2	간이화장실 시설면적 : 58.1㎡ (바닥 51.3㎡, 출입구 6.8㎡)
녹지 및 기타	55,467.9	-	-	-	-	55,397.7	70.2 (감)	51.3 (감)	-	18.9 (감)	-	녹지 70.2㎡ 감

4. 관계 도서 : 게재 생략

(공원 조성계획 변경 조서 및 관계 도면 등은 공람 장소에 비치)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150호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1. 인천도시계획(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 및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1995-218호(1995. 11. 17)】되고 사업시행인가【인천광역시 공고 제2000-105호(2000.03.25)】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 본부 토목부 지역개발팀(☎032-440-51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하였으며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 업 명 :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왕길동 일원
3.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4. 시행기간 : 2000. 03. 25 ~ 2013. 08. 31
5. 환지처분면적 : 999,838.6㎡
6. 환지처분내용
-각 필지별 새로운 지번, 지목, 면적, 지적도면 확정 및 청산금 결정 등

7. 기타사항

- 본 환지처분 공고로 인하여 종전 토지 공부상의 지번·지목·지적은 환지처분 내용으로 변경되며, 변경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의 공부 발급은 일정기일이 소요됩니다.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은 우리 본부에서 정리할 것이나, 청산금 징수대상 토지는 청산금 납부 시 정리됩니다.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별도로 통지하며, 교부금은 본인 청구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및 시행조례 제17조에 의거 우리 본부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8. 관계도서 : 개재 생략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15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3년 05월 27일 ~ 2013년 06월 10일까지(15일간)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

가. 자진납부기한 : 2013년 06월 29일

나. 납 부 방 법 :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신한)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되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3년 06월 29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운행제 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승달 대상

연번	대상자	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차량	처분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김정열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9, B동 206호 (옥련동, 흰별오피스텔)	2013.3.18	인천 중구 향동검문소	속중	서울07-83**	640,000	폐문부재	
2	김영운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68번길 27, 403호 (장현동)	2013.3.19	인천 중구 향동검문소	총중량	경기98아61**	1,200,000	수차인불명	
3	최연근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44번길 32	2013.3.19	인천 중구 향동검문소	총중량	충남99사15**	640,000	주소불명	
4	최창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북은14길 17 (신림동)	2013.3.19	인천 동구 만석동검문소	속중	인천99아53**	400,000	폐문부재	
5	이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오대로538번길 4-7, 6동 B01호 (호상동, 원욱빌라)	2013.3.22	인천 서구 석남동 불수대로	속중	인천06바67**	400,000	폐문부재	
6	한용주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130-1, 303호 (하중동)	2013.3.25	인천 중구 향동검문소	폭	서울83사18**	400,000	수차인불명	
7	조용준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56번길 37, 5층호 (연희동)	2013.3.25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대로 남동경찰서앞	속중	서울06차73**	400,000	폐문부재	
8	안병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6길 12 (일동)	2013.3.25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은봉로	폭	81조91**	240,000	주소불명	
9	송진기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941번길 7-1, B동 B01호 (광명동, 신문빌라)	2013.3.26	인천 중구 향동검문소	속중	서울85바32**	400,000	수차인불명	
10	이종철	부산광역시 금정구 화천로5번길 45, 301호 (회동동, 정원맨션)	2013.3.14	인천 서구 월창동 중봉대로	폭	경남99바87**	240,000	폐문부재	
11	이선학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43번길 14-32, 102호 (주안동)	2013.4.1	인천 남구 용현동 아암대로 경인방송국앞	높이	인천99아70**	240,000	주소불명	
12	조대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692번길 14-6 (구월동)	2013.4.5	인천 중구 북상동1가 웰미도 대한제분앞	속중	충남94바31**	400,000	폐문부재	
13	이현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웅담로 3, 106동 1102호 (청학동, 시대아파트)	2013.4.9	인천 계양구 서운동 아나지로 유진참치앞	폭	경기06보57**	240,000	폐문부재	
14	김석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11-18, 2동 303호 (삼산동, 성우빌라)	2013.4.9	인천 계양구 직전동 기아자동차앞	폭	인천06사51**	240,000	폐문부재	
15	권희선	경기도 과천시 문원청계6길 24 (문원동)	2013.4.10	인천 서구 공촌동 경명로	폭	서울98사22**	240,000	폐문부재	
16	양길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저골2길 22, 104동 311호 (평화동1가, 평화주공아파트)	2013.4.11	인천 서구 공촌동 경명로(공촌정수사업소앞)	폭	전북80아16**	240,000	폐문부재	
17	박화준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72번길 11-7, 202호 (장현동)	2013.4.16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대로	폭	인천91아51**	400,000	수차인불명	
18	신재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남북로3길 14 (부곡동)	2013.4.19	인천 남동구 고잔동 능허대로	폭	인천98아88**	240,000	주소불명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15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 대상 : 불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3년 05월 27일 ~ 2013년 06월 10일까지(15일간)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불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

가. 납부기한 : 2013년 08월 13일까지

나. 납부방법 :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신한)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되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13년 08월 08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내역

연번	대상자	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차량	처분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홍상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27-1, 301호 (송파동)	2013.1.17	인천 중구 항동 중봉로	폭	대전88아189**	300,000	폐문부재	
2	황필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북운로4길 18-7, 204호 (이부자단독)	2013.1.17	인천 중구 항동	폭	서울82바53**	500,000	수취인불명	
3	강세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4-26, 107동 301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2013.2.19	인천 서구 검암동 SK 주유소 앞	축종	인천06바83**	500,000	폐문부재	
4	박성근	경기도 동두천시 벌마들로39번길 121, 10동 402호 (상패동, 무궁화타운)	2013.2.22	인천 남동구 장수동 백범로	폭	광주99시30**	300,000	폐문부재	
5	김일남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서3길 64, 401호	2013.3.11	인천 남동구 장수동 백범로	폭	서울98바72**	1,00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3-15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3년 05월 27일 ~ 2013년 06월 10일까지(15일간)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

가. 납부기한 : 2013년 06월 19일까지

나. 납부방법 :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신한)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되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운행제 한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대상자	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차량	처분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신정택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7번길 18 , 5층호 (정현동)	2012.11.21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해안남로	길이	인천98자37**	1,062,000	수취인불명	
2	김영만	강원도 원주시 시정로 524 , 502동 1102호 (관철동, 원주단관정솔5차아파트)	2012.10.23	인천 남구 용현동 아암로 정비단지 앞	폭	인천80아44**	315,000	수취인불명	
3	이제남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84-13 , 3동 202호 (만석동, 수정빌라)	2012.10.24	인천 중구 항동 항동과적차량검문소	축하중	경기06로77**	525,000	폐문부재	
4	송동환	경기도 시흥시 큰송공원로19번길 5 , 104호 (정왕동)	2012.11.1	인천 계양구 서운동 안아지로	폭	전남84바10**	315,000	수취인불명	
5	김광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205번길 20-10 , 302호 (논현동)	2012.11.5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암로	폭	인천98아64**	315,000	수취인불명	
6	김상기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북문로5길 16-4 , 303호 (모닝하우스)	2012.9.20	인천 중구 항동 항동과적차량검문소	축하중	충북06노72**	537,000	폐문부재	
7	김광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1-1 (쌍촌동)	2012.9.21	인천 남구 용현동 아암로	폭	전남98사77**	1,074,000	폐문부재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6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5. 27.

인 천 광 역 시 장**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 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 및 기능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공공보건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안 제2조)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공공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개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교육 및 기술지원 등
-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다. 지원단 운영의 위탁(안 제4조)

-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

라. 지원단의 조직 등(안 제5조)

- 지원단의 정원 및 인력구성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함

마. 사업계획승인 및 실적보고(안 제6조)

- 위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회계의 분리(안 제7조)

- 지원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관리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보건정책과, 전화 : 440-2712, FAX : 440-8657, E-mail : cheonghaek@korea.kr)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지원
3. 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교육 및 기술지원
4. 의료기관 간 의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지도
5. 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조사·연구
6.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보구축 및 통계
7.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8.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단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단 운영규정 및 운영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비롯한 지원단 인력의 임면·해임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건의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보건의료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명
 3.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 1명
 4. 사업관련 담당 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단의 조직 등) ① 지원단의 정원 및 인력구성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단장을 비롯한 지원단 인력의 자격기준, 채용, 임면·해임 등의 절차 및 방법, 급여기준 등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지원단 운영규정 및 운영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위탁기관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 개월전 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7조(회계의 분리) 단장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탁기관의 정관, 운영규정, 운영내규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3년간은 지원단의 운영을 인천의료원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5. 27.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사유**

- 가. 사업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나. 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총괄 부서와 북부권역의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사업소를 신설하며,
- 다.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8개 →5개)하고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조정함.
(안 별표 2)
- 나.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재난·안전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제8조)
- 다. 계양공원 등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하고, 녹지관리사업소를 폐지함.[안 제13절의2(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3까지)]

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을 2013년 8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조례 제4030호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제8조 조명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재난·안전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제4장에 제13절의2(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절의2 북부공원사업소

제59조의2(설치) ①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쾌적한 도시생활의 확보와 정서순화를 위한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부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둔다.

제59조의3(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보수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도시녹화사업 및 주요녹지대의 조성·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의 제23절(제78조부터 제79조까지)을 삭제한다.

조례 제40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2013년 8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⑫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2]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명칭·위치 관할구역(제3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6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1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	중구(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일원 제외), 동구, 남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중구(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일원), 연수구, 남동구, 용진군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30	부평구, 계양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1번길 26	서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마니산로 9	강화군 일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경제수도추진본부, <u>자치행정국</u> ,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건설교통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6조(실·국·본부의 설치) ----- ----- ----- <u>안전행정국</u> ----- ----- ----- ----- -----.
제8조(<u>자치행정국</u>) <u>자치행정국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생략) <u><신 설></u> 15.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8조(<u>안전행정국</u>) <u>안전행정국장</u> ----- -----. 1.~14.(생략) 15. <u>재난·안전정책의 총괄·조정</u> <u>에 관한 사항</u> 16. (현행과 같음) <u>제13절의2 북부공원사업소</u> <u>제59조의2(설치) ①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쾌적한 도시생활의 확보와 정서순화를 위한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부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u> <u>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둔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3절 녹지관리사업소 제78조(설치) ①도시녹화사업 및 주요녹지대의 조성·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녹지관리사업소(이하 이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에 둔다. 제79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수목·화훼·잔디의 수급계획, 재배, 양묘 및 증식연구 2. 시장이 정하는 녹화사업의 시행 3. 시장이 정하는 녹지대 관리 및 병충해 방제 4. 녹화사업에 따르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 재산관리 5. 시장이 정하는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및 화단조성	제59조의3(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보수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도시녹화사업 및 주요녹지대의 조성·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8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5. 27.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사유**

- 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업무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총정원을 조정하고,
- 나. 사업소 구조의 체질개선을 통해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소를 5급 팀장체제로 개편 및 수도사업소를 권역별 통합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며,
- 다.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 및 소방행정의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를 위한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 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정원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안전을 위하여 안전업무를 총괄할 전담기구를 자치행정국에 신설하고, 그에 따른 정원 10명을 증원함.(안 제2조, 안 별표 3)
- 나.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8개→5개)하여 4급 사업소로 개편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직급을 상향하며, 그에 따른 4급 6명을 증원함.

(안 별표 2, 별표 3)

- 다. 사업소 5급 팀장제 개편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비율과 별정직 공무원(2명)의 직급 조정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안 별표 2)
- 라.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북부공원사업소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4급 1명을 증원함.(안 별표 3)
- 마. 소방력 대비 적정 감사·감찰 인력확보로 클린 소방 구현 및 예방적 감찰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4급(소방정) 1명 증원함.(안 별표 3)
- 바.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5.12.31까지 연장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666명” 을 “5,676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315명” 을 “3,325명” 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13-02-2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 율	6% 이내	19% 이내	35% 이내	34% 이내	6%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12% 이내	37% 이내	47% 이내	3% 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8% 이내	82% 이상	17% 이내	83% 이상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6% 이내	9% 이내	16% 이내	31% 이내	34% 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 이 상	5급상 당	6급상 당	7급상 당	8급상 당
비 율	35% 이내	4% 이내	36% 이내	20% 이내	5%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13-02-21>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 회 사무처
		소계	본청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총 계	5,676	5,580					96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2,644	2,572					72
1급	1	1			1		
2급	1	1			1		
2급·3급	1						1
3급	18	18	10	1	4	3	
3급·4급	2	2	2				
4급	126	123	67	4	17	35	3
5급 이하	2,495	2,427					68
별정직 소계	26	21					5
1급 상당	1	1	1				
4급 상당	8	3	3				5
5급 상당 이하	17	17					
연구직 소계	137	137					
연구관	21	21		16		5	
연구사	116	116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3	3		3			
지도사	20	20					
소방공무원 소계	2,255	2,255					
소방정	14	14	6	8			
소방령 이하	2,241	2,241					
기능직 소계	590	571					19

[별표 4] <개정 2011-02-14>

한 시 정 원(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원	존속기한	비 고
총 계	계		63		
	일반직	3급	1		
		4급	4		
		5급이하	57		
	기능직		1		
본 청	일반직	3급	1	2015.12.31	-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
		4급	4		
		5급이하	39		
	기능직		1	2015.12.31	
사 업 소	일반직	5급이하	18	2013.12.31	- 도시철도2호선 건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 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 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u>5,666명</u> 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3,315명</u> 2.~4.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u>5,676명</u> ----- -----. 1. ----- <u>3,325명</u> 2.~4.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별표 3)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정원의 조정 : 5,666명 → 5,676명(10명 증원)

- 일반직 : 10명 증원 (4급 이하)

나. 추계 결과 : 연 675,750천원 요인 발생

○ 일반직 : 675,750천원 (67,575천원×10명)

- ※ 산출기초 : 2013년도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
(일반직 단가 67,575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활용 (총액인건비 범위내)

작성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김 진 용